

상법개정안 진술문

2025. 01. 15.

최준선(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상법 개정 반대 진술문)¹⁾

I. 충실의무조항 개정문제

1. 문제의 본질

요즘 상법 개정 논의가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대립구도로 몰고 가려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회사들이 소수주주 때문에 상법개정안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상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영권 분쟁을 통해 막대한 자본이득을 취하려는 투기자본에 강력한 무기를 제공하기 때문임. 대주주의 권리는 제한하면서 투기자본의 권리는 보호하게 되는 결과, 불공평하고 반비례적인 권리를 투기자본에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임

한국에서는 투기자본의 기업인수 시도가 없었고, 기껏해야 감사선임이나 배당 상향 주주제안 정도일 뿐인데 호들갑 떠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견해도 있는데, 이는 휴전선 근처에서 국지적 총격전만 있으니 전쟁을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는 것과 같음. 한 번 전쟁이 터지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데는 불가역적이듯이 적대적 M&A 방어수단은 반드시 필요함

거대투기자본은 언제든지 기업을 공격할 수 있으며, 상법 개정은 지배주주 외의 일반주주 보호라는 취지와 달리 자본력을 보유한 해외투기펀드에 악용될 소지가 크고 특히 중견·중소기업은 분쟁 대응에 취약한 것이 현실임

1) 이 공청회에서 상법 개정 찬성 입장으로 서울대학교 송옥렬 교수와 명한석 변호사가, 반대 입장으로 필자와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이 각각 진술하였음.

2. 현실적 문제

상법 개정론자들은 과거 삼성물산, LG에너지솔루션, 두산밥캣 등 기업 리벨런싱의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 고려아연 사건에서 신주발행 사건이나, 신성통상에서 자진상장폐지에서까지도 이사의 책임을 문제삼고 있음. 결국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합병, 분할과 이중상장, 포괄적 주식교환과 포괄적 주식 이전, 자기주식취득, 신주발행, 전환사채 발행, 이익배당, 신사업 진출, 계열사 지원, 임원 보수, 부동산 매각 등 모든 이사회 결의 관련, 모든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아야 하며, 만약 일부 주주가 피해를 본다면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발전

이처럼 모든 문제를 하나의 catch all provision으로 해결하는 것은 마치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법규처럼 상징적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하기는 어려움

상장회사협의회 제정 표준 이사회 규정상 이사회 결의사항이 총 69건, 조문 수로는 99개 규정이 있음. 충실의무 도입은 자본거래는 물론, 이와는 상관 없는 모든 이사회 결의사항, 예컨대 신사업 진출, 자진상장폐지 등에 대해 일반주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결정하라는 의미이며, 이사의 책임의 소멸 시효는 10년이므로 10년까지 이사는 손해배상 소송 피소 가능. 이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임. 한국 M&A 시장은 이미 소멸되고 있는 중임(‘딜 흑한기’...대기업 M&A 7년 만에 최저 2022년 16조 338억원 → 2024년 4조 8192억 원: 한국경제신문 2024-12-23 1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가 아닌 주식의 소유자이고, 법률상 자기가 투자한 주식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며, 주식만 포기한다면 회사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적·엄격한 유한책임제도를 취하고 있음. 이사는 주주의 대리인이 아닌 회사의 대리인인데, 이사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주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 주주의 유한책임도 인정되지 않아야 논리적으로 맞음

3. 이론적 문제

많은 경영학 교수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이사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충성의무’가 아님. 이사의 충실의무란 민법상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의 하나의 내용으로 1998년에 처음 상법에 도입(상법 제382조의3)

- 선관주의의무는 미국법상의 fiduciary duty(信認義務)와 유사
- 신인의무는 3가지 내용을 포함
 - (1) Duty of care 주의의무
 - (2) Duty of good faith 성실의무
 - (3) Duty of loyalty 충실의무 → Duty of loyalty involves disclosing or avoiding any **conflicts of interest**, while duty of care requires each party to practice due diligence before acting.

2023년판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제5장 A는 이사회에 책임에 관해 규정하는데, 본조에 대한 코멘트(해설)을 보면,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를 신인의무(fiduciary duty)라고 하면서, 이 신인의무의 두 가지 핵심 요소로서 **주의의무(duty of care)**와 **충실의무(duty of loyalty)**라고 명시 → 한국 상법 개정안은 법리적으로 전혀 맞지 않은 포폴리즘

충실의무란 이사가 회사와의 이해충돌을 회피하여야 할 의무로서, 구체적으로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해 회사의 재산을 편취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 미국, 일본, 한국의 공통적 理解로서 global standard. 이를 다른 의미로 활용하는 것은 global standard에 벗어나는 것이며 상법의 이론과 체계를 파괴하는 것

상법상 충실의무의 3가지 구체적 내용

- (1)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과 경쟁이 되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것(競業禁止義務)(상법 제397조)
- (2) 회사와 거래하지 말 것(自己去來禁止義務)(상법 제398조)

(3)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事業機會流用禁止) (상법 제397조의 2)

상법 개정론자들은 이 충실의무를 주주에게까지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실의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됨 → 이사가 회사 재산이 아닌, 일반 주주재산을 편취할 계기가 전혀 없기 때문

충실의무 입법례(전혀 없음): ‘충실의무(duty of loyalty)’라고 표시한 미국 회사법 중에서도 ‘회사와 그 주주’를 명문으로 언급하고 있는 주는 델라웨어주 일반회사법뿐이며(Section 102(b)(7)), 그것도 충실의무 자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이사나 임원이 회사나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면책은 정관에 규정하더라도 이사나 임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이며, 이 내용은 한국상법(제400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이해관계충돌 회피규정과 내용이 유사함. 즉, 한국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는 競業禁止義務, 自己去來禁止義務, 事業機會流用禁止義務를 위반한 경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을 금지하고 있음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b)항 (7)호

(b) 본 섹션의 (a)항에 따라 법인 정관에 명시해야 하는 사항 외에도 정관에는 다음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될 수 있다:

(7) 이사 또는 임원으로서의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사 또는 임원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제거하거나 제한하는 조항(단, 해당 조항이 다음의 책임을 제거하거나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i) 이사 또는 임원의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에 대한 이사 또는 임원;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입법되면 외국 투자자들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로펌에 문의가 폭주할 것이며, 한국 법학의 허접함과 한국 입법기관의 무지가 세계적 조롱거리로 될 것

4. 현재도 해결방안은 충분

주주 보호의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현행법상으로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주주에 대한 직접손해가 발생하면 상법상 이사의 제3자에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해 주주가 직접 이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실제로 국민연금은 2014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시 합병 비율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다면서 소멸시효 완성 직전인 2024년 9월 서울중앙지법에 당시 이사들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 제기. 이사의 주주 보호는 상법에 선언적 규정을 두는 방식이 아닌 현행법의 해석론과 판례의 발전을 토대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

일본에서도 동경고등법원 2019년 7월 17일 판결을 보면 소수주주가 일본 민법과 상법 규정을 원용하여 신주예약권부사채의 불공정 발행을 이유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바 있음(일본 상사법무 No. 2339 참조)

고려야연 신주발행 철회, 신성통상 자진상장폐지 실패 등에서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또는 경영진에 대한 견제기능이 작동 중임을 확인

이사가 자기 자신의 사익을 위하여는 물론이고,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충실의무 위반이 됨. 이때의 제3자에는 지배주주 또는 주요주주도 포함되며, 현행법상 이사가 지배주주 개인을 위해 불법적이거나 지배주주 또는 주요주주에게는 이익이 되면서 동시에 회사(또는 전체 주주)에게 손해를 미친다면 그 사무를 집행한 이사는 이미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고, 현재 상법 제382조 제3항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의거 처리됨. 따라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조항을 개정할 필요도 없으며, 동시에 이는 배임·횡령의 문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됨.

반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의 경우는, 충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배임죄 고발이 있어도 형사처벌은 불가. 소송이 제기되어도 이사는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음

형법 제355조 제2항: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만, 기업구조조정 또는 리밸런싱 사안에서 합병비율 등의 문제는 분명히 개선의 여지가 있음

5. 대 안

일본의 경우는 2005년 회사법 제정시에 합병·분할·주식교환·주식이전 등 기업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주주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하여 ‘공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일본회사법 제5편 조직재편, 합병, 회사분할,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제785조 제1항, 제797조 제1항, 제806조 제1항). 이는 합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너지를 지배회사가 독점하게 되고, 소멸하는 종속회사의 주주들은 주주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도쿄 지방법원 2024년 3월 23일 판결을 보면 ‘공정한 가격’을 확정하는 방법으로, △시장가치 및 이에 대한 동종 사례의 프리미엄의 평균값 또는 중간값, △회사가 선임한 제3자 평가기관 및 이사회 내 특별위원회가 선임한 제3자 평가기관의 주식가치 산정 결과, △협상 과정에서 특별위원회가 위 제3자 평가기관들의 전문적 자문을 바탕으로 결정한 협상 방침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격이라고 판단

독일의 경우는 조직재편법(Umwandlungsgesetz) 제25조 제1항, 조직재편법 제125조 제1항, 조직재편법 제176조 제1항, **조직재편법** 제205조 제1항 등에서 조직변경 관련 이사의 과실에 기한 주주의 직접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규정

한국 자본시장법 개정 정부안은 일본의 “공정한 가액”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회사법의 조직재편규정과 유사하며 타당함.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무리 없으며 바람직

II. 총주주의 이익 보호의무

총주주 보호 의무가 법적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현행 법제는 이미 주주 보호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음. 주주 보호는 회사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이며, 이를 반대하는 입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음. 해당 조항이 없더라도 주주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명문 규정의 필요성에 의문

독일·일본도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미법은 합병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 의무를 인정하나, 주주에 대한 일반적인 법적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미국법은 일반주주를 지극히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미국만큼 지배주주의 뜻대로 다 할 수 있는 입법제도 드물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주주억압 (shareholder oppression)나 지배주주에게 비례적이지 않은 이익 (non-ratable benefits)이 주어지는 경우는 판례를 통하여 정교하게 수정하고 있음

주주억압은 소수 주주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거부당하거나 대주주가 다수 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소수 주주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에는, “주주의 권리행사를 보호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하며, 소액주주와 외국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평등한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모든 주주는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원칙은 법률이 아니며, 여기서 말하는 보호의무는 선언적인 것에 불과함. 여기서 말하는 보호의무와 평등한 대우 의무 규정은 그렇게 하지 않은 나라들을 타깃으로 한 규정이며, 한국과 같은 국가는 이미 소액주주보호를 위한 규정을 다수 갖추고 있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는 나라임

주주보호의무를 규정하면 주주보호가 최우선이 되어 채권자나 고객 등 다른 이해관계자를 보호는 소홀해질 우려가 큼. 기업 경영은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미국 1985년 유노칼(Unocal) 판결에서도 이사회가 적대적 인수 방어 조치를 취할 때 다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한 바 있음. 나아가 이사의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구체적 행동지침과 책임 범위 등이 불명하여 법 해석에 대한 기업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음.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과 동경증권거래소는 2023년 기업 인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업 가치 향상과 주주 이익 확보를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였음. 그러나 일본의 가이드라인에서는 “주주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입장이 아닌, 기업 가치는 주주 가치와 부채 가치의 총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음. 이는 주주 이익과 기업의 전체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주주 보호 의무 도입의 실질적 효과를 주장하는 이들 중 상당수는 사모펀드나 헤지펀드와 같은 단기 수익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들임. 이들은 조항 도입을 통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이는 기업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균형 잡힌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업은 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이를 간과하는 입법은 기업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예컨대 약탈적 행동주의 펀드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야금야금 사 모았다가 갑자기 어느 건실한 회사의 대주주에게 경영권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 이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행동주의 펀드도 주주이고 현재 경영권을 쥐고 있는 자도 주주인데 이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도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길도 없음

만약 이사가 경영권 분쟁에서 현 경영진을 옹호하게 되면 현 경영진을 공격하는 행동주의 펀드는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상적 관념에 지나지 않는 만큼 자본 시장법 개정을 통해 문제사례만 규율하는 핀셋 규제가 바람직하며, catch-all provision은 경영인의 행동범위를 크게 제약함으로써 피해야 함

밸류업의 핵심은 기업성과와 전망이며, 전 세계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인 작금 총주주의 이익 보호를 우선하라는 개념도 모호한 규정이 상법에 도입될 경우, 이사는 손해배상소송과 배임죄 처벌 우려로 어떤 의사결정도 하지 못해 기업 성장이 저해될 수 밖에 없음. 상법의 기본 틀을 흔들기보다 개별적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

III. 공평대우 의무

공평한 대우 의무는 주주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제안된 개념임. 그러나 “공평”이라는 개념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각 이해 당사자가 이를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큼. 공평의 개념은 사람마다 다름. 공정·공평과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은 혼란만 가져올 것이며, 사업상 분쟁해결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 미국 레블론(Revlon) 판결은 기업이 M&A 과정에 직면했을 때 주주의 금전적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입법례로 영국 2006년 회사법 제994조에 “unfairly prejudicial(불공정한 침해)”와 같은 표현이 나오지만, 불공정한 침해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그 적용대상 내자 청구의 사유가 매우 다양하고 탄력적이며, 법원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경우 불공정한 침해 청구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될 위험이 있음. 영국법원은 이를 경계하기 위해 법문에도 없는 “정당한 기대” 또는 “형평법적 요소” 등의 계약법상의 용어를 사용하여 불공정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법심사를 정립함. 결국 이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의 사용은 또 다른 해석기준을 판례가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적용될

수 있으나, 대규모 집단적인 거래가 일상화되어 있는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이고, 영국법상 불공정한 침해청구는 사실상 조합 유사의 비상장회사의 소수주주를 위해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짐²⁾

공평이 주주평등을 의미한다면 이미 주식평등의 원칙이 상법상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이 필요 없음. 상법 전반에 걸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주식평등원칙이며, 이 원칙에 따르면 소액주주가 가진 1주나 대주주가 가진 1주의 가치는 같다는 것임. 대법원도 주주평등원칙은 침해될 수 없는 가치임을 다수의 판례를 통해 밝힌 바 있음

총주주를 위해 공평의무를 부담한다면 공평의무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으면 그 손해배상도 총주주를 위한 것이지 개별주주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손해배상금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도 문제임

노력의무 → 법률에 ‘노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 등의 의무로서 “환경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 아동 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등의 규정 → 이는 국가와 행정청의 책무나 국민의 일반적인 의무의 하나로서 행정법과 같은 공법(公法)에서 나타나는 훈시적 규정 →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명료하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과 상법 같은 사법(私法)에서는 이와 같은 표현은 매우 부적절 → 의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이런 규정은 법적 안정성을 해침 → 당연한 것을 법으로 규정해야 할 만큼 한국 국민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

IV.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는 의결권 3% 제한을 받는 반면 투기자본은 일명 ‘지분 쪼개기’를 통해 모든 의결권을 행사 가능. 현행 감사위원 1명 분리선출

2) 안태준, “영국 회사법상 주주를 위한 법적 구제수단으로서의 불공정한 침해(unfair prejudice) 법리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40권 제2호 (2021) 참조.

의무를 감사위원 전원 분리선출로 변경하고 이들 각각에 대해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까지 적용하면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감사위원회 장악 및 경영권 위협 급증

세계적으로 감사위원 선임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입법례 전무하며, 영권 공격세력이 적어도 1명 이상 감사위원을 이사회에 진입시킬 수 있게 됨. 감사위원은 이사로서 중요 사항에 대한 결정 권한과 기업 감사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경쟁기업, 해외 투기자본이 지지하는 위원 선임시 해당 기업의 주요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 상존

특히 감사위원은 이사이므로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 선임권을 소액주주에게 부여하는 입법례는 한국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는 경영권의 침해에 해당함

V. 집중투표제도 의무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나라는 러시아, 멕시코, 칠레, 중국,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으로 OECD 국가 중 **의무화한 나라는 없음**.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캐나다는 정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중투표제를 허용. 집중투표제 의무화한 멕시코(포이즌필, 차등의결권), 칠레(차등의결권) 러시아(외국인투자제한, 황금주)는 한국과 달리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미국은 1940년대 22개주에서 집중투표제를 강제했지만 기업사냥꾼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 부작용 경험으로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전환. 현재 애리조나, 네브래스카, 사우스다코타 등 3개 주만 의무화,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는 주주가 청구하면 할 수 있음.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에서는 비상장사에 대해서만 집중투표제를 의무화. 미국 교원연금인 TIAA/CRFF는 투자방침서에서 경영 비효율을 이유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못하도록 규정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은 주주 간에 파벌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김. 일본회사법 제342조에서 집중투표를 규정, 대부분의 기업이 정관상 이를 배제

집중투표제는 의결권 행사 전략에 따라 2~3대 주주가 이사회 다수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기본원칙인 자본다수결 원리를 위배할 가능성 크며, 헤지펀드들은 단기이익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 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나 소수주주들은 집중투표제로 이사를 선임하기 어려움. **영업비밀 등 중요 정보의 유출가능성**

이질적인 이사회 멤버 구성으로 인해, 주주 간 **경영권 다툼**과 그들을 대표하는 **이사 간 갈등**이 커지게 될 가능성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한 것은 주주 절대다수의 동의에 따른 것인데, 집중투표를 의무화시킬 경우 주주의 자기 결정권이나 정관 자치주의 등 기업 자율성을 크게 훼손시키는 것

VI. 독립이사제 도입 및 이사회 구성방식 강제

상장회사의 독립이사 비중을 현행 상법상 사외이사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해 기업의 경영 자율성 훼손. 현재도 한국 사외이사 비중은 자율에 맡기고 있는 일본 등에 비하여 과도한 규제임. 예컨대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의 경우 이사회는 1명 이상으로 한다는 규정(제141조(b)) 외에 이사회 구성을 기업 재량에 맡기는 것과 큰 차이

명칭변경 실이익 없음. 제정안은 독립이사를 ‘최대주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사)’라는 설명 외에 별다른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지 않음. 현행 ‘사외이사(Outside Director)’ 제도는 회사 경영진이 아닌 외부의 인사를 이사회에 참여시켜 대주주의 독단경영과 전횡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독립

이사'로서의 기대 역할 이미 충분히 수행 중. 특히 사외이사의 덕목은 전문성과 독립성인데, 한국 상법과 그 시행령은 자격요건 및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결격사유가 수 십가지에 이르고 있어 한국의 모든 사외이사는 모두 독립이사임. 따라서 명칭만 독립이사로 수정한다는 것은 무의미함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통용되는 사외이사 용어와 개념을 전부 변경해야 하는 등 법체계 혼란 초래

VII.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전자투표 플랫폼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으로 전자투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오히려 각종 소송에 휘말려 기업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지면서, 전자주총·현장주총 병행 개최시 기업 입장에서는 의결권 행사 주식수를 합산하고 중복 투표를 제외하는 등 표결 결과를 집계하는데 혼란이 큼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이나 모범회사법, 독일의 주식회사법, 캐나다 회사법 등도 전자주총이나 전자+현장주총 병행 개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제정안처럼 전자+현장주총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진 않음